##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 안 번 호 13626

제안연월일: 2021. 12.

제 안 자: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

##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가. 2021년 5월 20일 양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」 및 2021년 5월 27일 이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각각 제388회 국회(임시회)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(2021. 6. 16.)에 상정되어 제안설명,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회부되었음.

- 나. 제391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(2021. 9. 28.)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.
- 다. 제391회 국회(정기회) 제8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(2021. 11. 11.)에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법률 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  - ※ 제391회 국회(정기회) 제8차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(2021. 11.11.)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

##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,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·단체의 연구개발 역량,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막대한 예산이 수도권과 그 인근지역에 편중·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그 평가요소로 '지역적 파급효과'를 추가함으로써, 지역 간 균형있는 산업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.

또한, 현행법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때에는 그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하고,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으나, 기술료 징수의 감면 대상에 관하여는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위임하고 있음.

기술료의 징수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법률에서 그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 람직하므로,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 함으로써,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##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시 평가요소로 '지역적 파급효과'를 추가함(안 제10조제2항제3호).
- 나.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, 기술료 감면 사유에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(안 제18조제3항).

#### 법률 제 호

##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제3호 중 "경제적"을 "경제적·지역적"으로 한다.

제18조제3항 중 "징수액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액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"제3항 및 제4항에"를 "제4항에"로 한다.

- 1.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 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2.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
- 3.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
- 4. 그 밖에 기술료의 징수를 감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### 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평가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연구개발 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계약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	제10조(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
구개발기관의 선정) ① (생	구개발기관의 선정) ① (현행과
략)	같음)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	②
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(이	
하 "선정평가"라 한다)를 거쳐	
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	
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	
다. 다만, 해당 국가연구개발사	
업의 목적·성격을 고려하여	
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	
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하지	
아니할 수 있다.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ㆍ기	3
술적·사회적· <u>경제적</u> 파급효	<u>경제적·지역적</u>
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	
가능성	
4. • 5. (생 략)	4.•5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8조(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)	제18조(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)
①・② (생 략)	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	3

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 -----다음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|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- ④ ~ ⑤ (생 략)
- ⑥ 제2항에 따른 납부 기준, 제 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면 기 준과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액-----

- 1.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 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 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2.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 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
- 3.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 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 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
- 4. 그 밖에 기술료의 징수를 감 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④ ~ ⑤ (현행과 같음)
- 4항에-----

용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	
정한다.	